



원자력안전위원회

수신 전자빔용접장치 사용등 업체 56개사 및 관련 협회 귀하
(경유)

제목 전자빔용접장치 생산, 판매, 사용 업체의 허가등 신청 안내

1. 관련: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(방사성동위원소·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(사용허가등의 신청)
2. 전자빔용접장치(이하 'EBW')를 생산/판매/사용(이하 '사용등')을 하기 위해서는 「원자력안전법」(이하, '원안법')에 따라 **사전에 허가등을 받아야 함**을 알려드립니다.
3. 우리 위원회가 관세청 등을 통해 EBW 사용등 현황을 파악한 결과, 여러 업체에서 **사전 허가등을 받지 않고 EBW 사용등의 행위를 하고 있음**을 인지하였습니다. 이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(허가대상) 또는 제2항(신고대상) 위반으로 **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** 있습니다.
4. 다만, 처벌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보다는 **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사선안전정책** 추진을 위해 대상 업체에 대해 **한시적으로 허가등 신청 유예기간 및 인센티브**를 부여 하오니, 빠른 시일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원안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 등) 예정
5. 규제근거 및 유예기간 등
 - 가. 규제 대상 및 허가등 근거
 - 1) 대상: 원안법 제2조제9호 정의에 따라 EBW는 "방사선발생장치"에 해당
 - 2) 근거: 같은 법 제53조(방사성동위원소·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)
 - 나. 유예기간 및 인센티브
 - 1) EBW 생산 또는 판매: **2023년 12월 31일**
 - 2) EBW 사용: **2024년 6월 30일**
 - 3) 인센티브: 신규허가 또는 신규신고에 대한 부담금 면제
6. 허가등 신청관련 규정(제출서류 등)
 - 가. EBW 생산 또는 판매: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또는 제59조
 - 나. EBW 사용(시험 및 연구개발):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
 - 다. EBW 사용: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

7. 기타 안내

가. 허가등 신청은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(<http://rasis.kins.re.kr>)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신청관련 문의는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(080-004-3355)로 주시기 바랍니다.
끝.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

공업사무관 이동민 방사선안전과 전결 2023. 5. 8.
장 이경용

협조자

시행 방사선안전과-606 (2023. 5. 8.) 접수

우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, (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) (남창동) / <http://www.nssc.go.kr>

전화번호 02-397-7331 팩스번호 02-6273-7813 / dmllee0704@korea.kr / 비공개(5)

국민과 소통·공유하며, 「원자력 안전」 바로 세우겠습니다.